

교육부 2026년도 예산 106조 3,607억 원 확정

-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2026년 정부안 대비 945억 원 증액
-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등 특별회계 관련 법률 제개정안 국회 의결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유아 사교육비 조사 및 인문사회연구소 등 1,668억 원 증액 반영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106조 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되어 최종 106조 3,60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영유아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① 2026년도 예산 주요 편성 방향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 ('26) 3조 1,448억 원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5극 3특의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대학 투자를 강화한다. 거점국립대학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지역이 협업하는 초광역 단위 인재 양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 1,403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 혁신 및 특성화를 위해 1,19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② 국가책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 : ('26) 3,348억 원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어 갈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1,258억 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타 분야와 인공지능(AI)을 융합하는 인공지능(AI)+엑스(X) 부트캠프 10개교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규 선정하여 인공지능(AI) 단과대학 운영 등을 수행하는 지역의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AI)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17개 인공지능(AI) 교육연구단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융합형 연구단 3개를 신규 지원한다. 덧붙여, 인공지능(AI) 분야 대학(원)생의 학업장려대출(연 2백만 원 한도)을 신설하여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선도국가와의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격차 완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등 2,090억 원을 투자하여 이공계 전 분야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③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26) 8,331억 원

2024년 6월 유보통합 관리부처 일원화에 이어, 유보통합 핵심과제인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과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올해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보육비를 지원하였으며,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4-5세로 대상을 확대하여 4,703억 원을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데 3,262억 원을 투자하고,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유보통합 핵심과제 추진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개편

①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또한,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되면서, 추가 재원의 전입이 기대된다. 추가 재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된다.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향후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다. 또한 2026년부터 「교육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이 되어, 2027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약 1.3조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재원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③ 정부안 대비 주요 변동내용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단가를 월 3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하며, 이를 위해 51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3% 인상되었던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를 5%까지 인상하여 192억 원 증액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 등 사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비용 8.7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 및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기초 연구 사업에 17억 원이 증액 반영되어, 인문사회연구소 신규과제를 정부안 27개에서 37개로 확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인문사회연구소 정부안 167과제(신규 27개) → 국회 확정 177과제(신규 37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라고 말하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교육부 2026년도 예산 설명자료
2. 2026년도 중점 투자과제
3. 교육세 및 특별회계 개편
4. 법안 주요 내용
5. 법안별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책임자	과장	김아영 (044-203-6033)
		담당자	사무관	우성현 (044-203-6034)
			주무관	황상민 (044-203-6046)

I. 예산 총괄

- '26년 교육부 예산은 106.4조원, '25년(추경) 102.6조원 대비 3.7조원 증가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25년 79.5조원 → '26년 82.1조원(+2.6조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년 70.3조원 → '26년 71.7조원(+1.4조원)
 - (고등교육) '25년 15.2조원 → '26년 16.0조원(+0.8조원)
 - (평생·직업교육) '25년 1.1조원 → '26년 1.2조원(+0.07조원)

< 2026년 교육부 예산 총괄표 >

(단위 : 억원, %)

구 분	'25년		'26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증감	확정(B)	(B-A)	%
▣ 총지출	1,048,684	1,026,437	1,062,663	945	1,063,607	37,171	3.6
【교육분야】	981,822	959,402	993,829	945	994,774	35,372	3.7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13,807	794,937	820,465	700	821,165	26,228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2,794	702,812	716,742	△54	716,687	13,875	2.0
▪ 고등교육	155,491	151,941	160,169	223	160,392	8,451	5.6
▪ 평생·직업교육	11,023	11,023	11,673	15	11,688	666	6.0
▪ 교육일반	1,501	1,501	1,522	7	1,529	28	1.8
【사회복지분야】	65,661	65,834	68,834	-	68,833	2,999	4.6
▪ 기초생활보장	1,652	1,652	1,711	-	1,711	59	3.6
▪ 공적연금	64,010	64,182	67,123	-	67,123	2,940	4.6
【보건분야】	1,201	1,201	-	-	-	△1,201	순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8,635	155,067	163,683	226	163,909	8,841	5.7
▪ 영유아특별회계	31,020	31,020	92,233	715	92,948	61,928	199.6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5년 15.5조원 → '26년 16.4조원(+0.9조원)
 - ※ 타부처 사업 포함 시 '25년 16.0원 → '26년 17.1조원(+1.1조원)
- 영유아특별회계 '25년(유평) 3.1조원 → '26년 9.3조원(+6.2조원)

II. 중점 편성 내용

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❶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 ('25) 4,242 → ('26) 8,855억원(+4,614)

- (교육 혁신 지원) 학부 교육 혁신 지원을 위한 국립대 육성 사업 지원 확대(+630억), 고가·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324억) 등
- (연구 역량 강화) 집중 육성 분야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신설(3교, 1,200억),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내 지역거점대 펠로우십 지원 확대(135억) 등
- (지역 교육·연구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거점대학 신설(3교, 300억), 인문사회 기초연구소(3교, 120억), 거점국립대 지역혁신 허브화 지원(1,200억원) 등

- ✓ 거점국립대 교육 혁신 : ('25년) 1,992억원 → ('26년) 2,622억원
- ✓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 : ('25년) -억원 → ('26년) 1,200억원
- ✓ 인공지능 거점대학 : ('25년) -억원 → ('26년) 300억원
- ✓ 기초·보호학문 연구 거점 : ('25년) 375억원 → ('26년) 520억원
- ✓ 거점국립대 지역혁신허브화 : ('25년) -억원 → ('26년) 1,200억원
- ✓ 거점국립대 고가·첨단기자재 : ('25년) 162억원 → ('26년) 486억원

❷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25) 19,410 → ('26) 21,403억원(+1,993)

- (재구조화) 기존 8개 내역 사업(2,964억)을 RISE 사업으로 완전 통합하고, 산업·경제권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동반성장 체계 구축
- (인센티브) 지역혁신 허브화*(2,000억), 성과관리 환류 인센티브(4,000억) 신설
* 거점국립대 지원분 1,200억원 포함
- (지역 혁신형 대학 육성) 기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글로벌 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❸ 대학 특성화 지원 : ('26) 1,190억원(+1,190)

- (특성화 인센티브^{신규}) 대학이 국가·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 혁신 등 대학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 ✓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 ('25년) -억원 → ('26년) 850억원
- ✓ 전문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 ('25년) -억원 → ('26년) 340억원

② 국가책임 AI 인재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

① 국가책임 AI 인재양성 : ('25) 189 → ('26) 1,258억원(+1,069)

- (기본교육^{신규}) 비전공 학생 대상 AI 윤리·활용 기본교육을 제공('26. 20교, 60억)하고, 예비교원 AI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26. 24억)

✓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 ('25년) -억원 → ('26년) 88억원

- (부트캠프) AI 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AI 부트캠프 확대(3교→40교) 및 AI+X 융합과정 지원(신규 10교) 신설

✓ AI 인재양성 부트캠프 : ('25년) 23억원 → ('26년) 570억원

✓ AI+X 인재양성 부트캠프 : ('25년) -억원 → ('26년) 50억원

- (거점대학^{신규}) AI 단과대학 등을 운영하는 AI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26. 3교)

✓ 인공지능 거점대학 : ('25년) -억원 → ('26년) 300억원

- (연구지원) AI 분야 BK21 연구단 지원('26. 17개) 및 AI 중심으로 복수학과가 연구에 참여하는 AI 융합형 연구단(3개) 신규 지원

✓ AI 교육연구단 지원 : ('25년) 124억원 → ('26년) 137원

✓ AI+X 교육연구단 지원 : ('25년) -억원 → ('26년) 42억원

- (학업장려^{신규}) AI·SW 분야 대학(원)생 학업장려대출 지원(年 200만원 한도)

✓ AI·SW 학업장려대출 : ('25년) -억원 → ('26년) 29억원

- (재직자)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교육과정 지원

✓ 재직자 AID 집중교육과정 : ('25년) 41.5억원 → ('26년) 41.5억원

②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 ('25) 1,827 → ('26) 2,090억원(+263)

- (첨단산업) 미래차, 로봇 등 부트캠프 및 특성화대학 지원 확대(+104억원)

-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 ('25년) 660억원 → ('26년) 722억원
-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 ('25년) 1,167억원 → ('26년) 1,209억원

- (이공인재 육성^{신규}) 우수인재 육성 및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우수 학부생을 선발하여 멘토링, 교육·연수, 연구까지 체계적 지원(159억원)

- ✓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 ('26년) 400명, 85억원
- ✓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 ('26년) 500명, 41억원
- ✓ 첨단분야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 ('26년) 120명, 8억원
- ✓ 반도체공동연구소 연합교육과정 운영 : ('26년) 19억원
- ✓ 산학연 협력성과 확산 : ('26년) 6억원

③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①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 : ('26) 8,331억원

- (무상교육·보육^{신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5세 학부모 부담분 4,703억원 지원

-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 ('25년) 5세, 1,289억원(6개월, 예비비) → ('26년) 4-5세, 4,703억원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신규})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1:3→1:2)

- ✓ 영유아보육료(인건비 미지원기관) : ('25년) -억원 → ('26년) 2,512억원
- ✓ 보육교직원 인건비(인건비 지원기관) : ('25년) -억원 → ('26년) 750억원

- (틈새돌봄^{신규})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충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침돌봄' 교사 수당(1시간) 신설

- ✓ 보육교직원 인건비(아침돌봄 교사수당) : ('25년) -억원 → ('26년) 365억원

② 영유아보육료 : ('25) 33,531 → ('26) 36,635억원(+3,104*)

- (단가 인상) 급·간식 제공 및 운영비 부담 등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0-2세·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 인건비 미지원 기관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예산 등 포함

** 0-2세 부모보육료 3%, 기관보육료 5% 및 장애아 보육료 3%

Ⅲ. 국회 주요 증액사업

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26확정) +514억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단가 2만원 인상(연장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만원)

※ ▲0~2세 담임교사 : 26만원→28만원(+2만원), ▲3~5세 담임교사 : 36만원→38만원(+2만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 13만원→14만원(+1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26안) 21,383억원 → ('26확정) 21,829억원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26안) 28,386억원 → ('26확정) 28,455억원

②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 ('26안) 13.1억원 → ('26확정) 21.1억원(+8)

-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의 역량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 자비 부담 해소를 위한 비용 지원 증액(+15,151명)

③ 유아 사교육비 조사 : ('26확정) 8.7억원(신규)

- 유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영유아 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아 단계 사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비용 증액

④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26안) 50,955억원 → ('26확정) 51,161억원(+206)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비용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약 206억원 증액

⑤ 인문사회 기초연구 : ('26안) 2,867억원 → ('26확정) 2,884억원(+17)

-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 및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연구소 신규과제 10개 추가 반영(연구소당 연 3억원 6년간 지원)

✓ 인문사회연구소 : ('26안) 신규과제 27개 × 338백만원 × 6/12개월 → ('26확정) 신규과제 37개 × 338백만원 × 6/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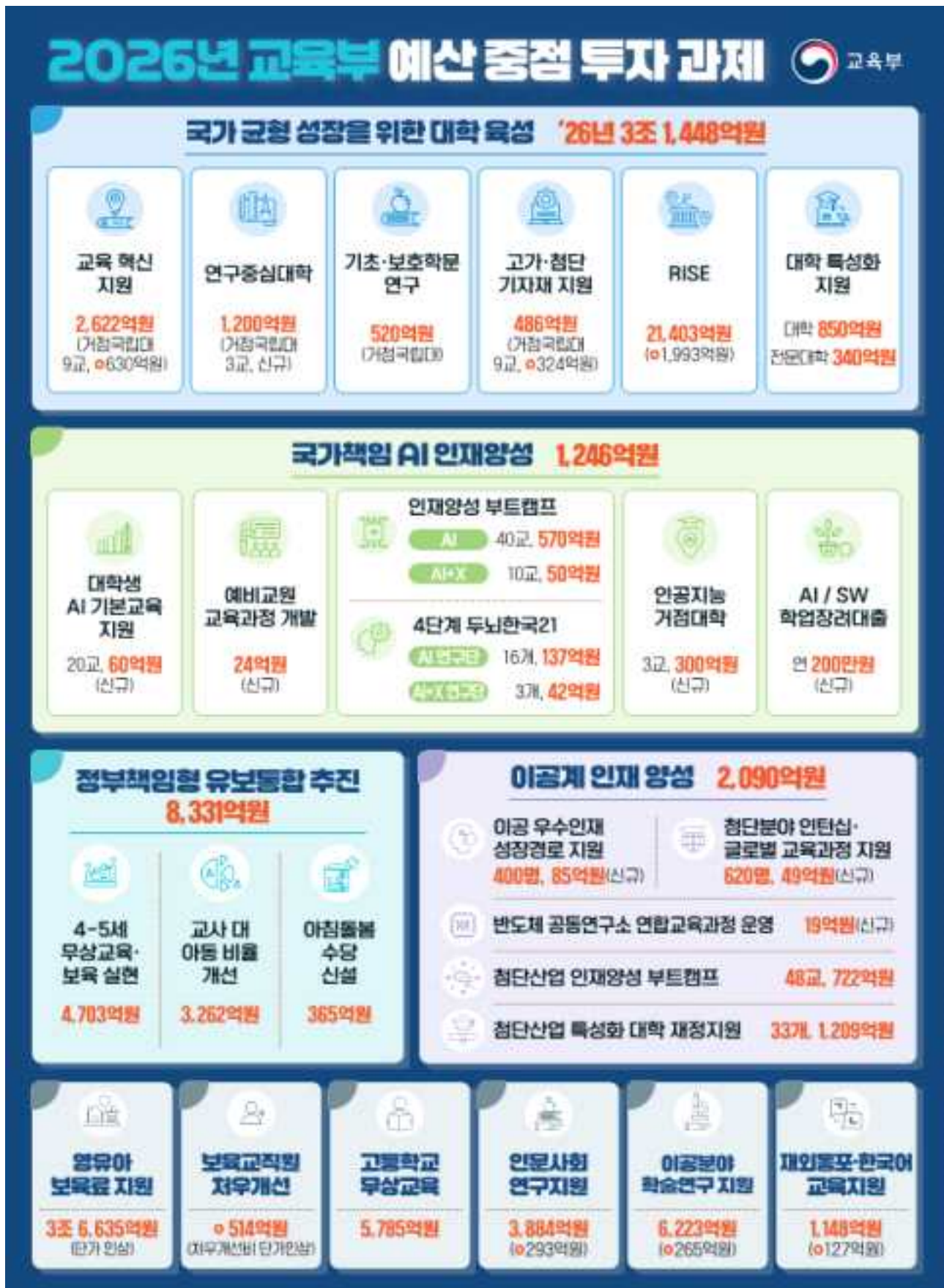
⑥ 국립학교 시설기자재 확충 : ('26안) 11,316억원 → ('26확정) 11,460억원(+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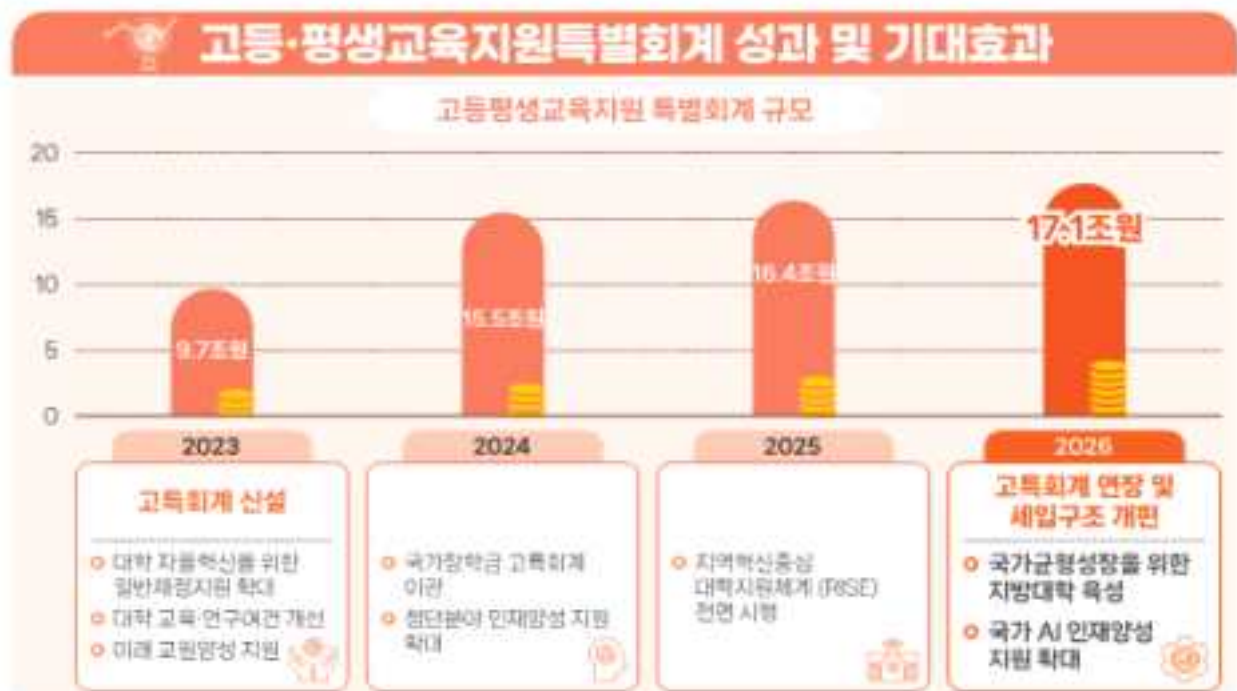
-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경북대 시설 확충 설계비,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124억원 증액, 세종 공동캠퍼스 기자재 지원 등

✓ 국립대학 시설확충 : ('26안) 9,016억원 → ('26확정) 9,109억원

✓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 ('26안) 2,023억원 → ('26확정) 2,043억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시설확충) : ('26안) 277억원 → ('26확정) 308억원





순	법률명	주요내용
1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안	·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세제개편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세입으로 교육세중 고특회계분을 제외한 금액의 60%를 전입 ·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 보육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영유아특별회계에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국정과제 수행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	· '25년 12월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을 5년 연장 · 세제개편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세입으로 국세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을 명시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 특별회계 설치 근거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삭제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 · 고특회계법 개정안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기간을 2030년으로 수정

1 영유아특별회계법(제정)

□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전담하는 일원화된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입)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하도록 하고, 이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추가로 전입하도록 규정한다.
- (세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본 특별회계의 세출로 규정한다.
- (시행일 및 유효기간) 동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동 제정으로 인해

-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교육세 개편과 연계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영유아교육·보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재원을 통합하여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며,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국정과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영유아재정과	과장 지혜진(7216), 이채영 서기관(7227)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6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 하도록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시·도 등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중 일부를 시·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③ 시·도 교육감 또는 시·도지사 등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도 지사 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중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

제4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 수입은 영유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비용 지급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영유아특별회계”로 한다.

-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개정)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지속적인 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입 항목 변경)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 (목적 및 세출 항목 추가) 목적 및 세출 항목에 지방대학 육성 추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세출 항목에 재정지원 사업 및 성과에 관한 조사·분석 수행 경비를 포함한다.
- (특별회계 운영 성과 국회 보고 의무화)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 (일몰기한 연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전략적 재정지원 기반을 견고히 하고, 정부 세제개편안(7.31.)에 따른 교육세 증세분을 활용하여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과장 안주란(6243), 최현정 사무관(6248)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u>개선 등을</u>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개선, 지방대학</u> <u>육성 등을</u> ----- ----- ----- -----.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 3. (생략)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u>인재양성</u>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생략) <신설> 6. (생략)	제5조(세출)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u>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u> -- ----- 5. (현행과 같음)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 <u>교육세법</u> 」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 <u>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u>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교육세법</u> 」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2030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